

부설연구소 운영규정

제정 2001. 6. 1 개정 2019. 8.11
개정 2009. 4.14 개정 2020.10.15
개정 2013. 8.23 개정 2022. 6.23
개정 2016. 9. 7 개정 2024. 4.17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 연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① 대학 부설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(개정: 2020.10.15)

1. “법인승인연구소”라 함은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설립하는 연구소를 말한다. (개정: 2020.10.15)
2. “대학승인연구소”라 함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설립하는 연구소를 말한다. (개정: 2020.10.15)

제 2 장 설 립

제3조(설립)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칭, 목적, 사업내용, 조직, 연구원, 운영위원회, 재정 등을 정한 설치 연구소의 운영 내용
2. 설립계획서 및 예산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 부설연구소로서 설립 가능하다. (개정: 2020.10.15)

1. 사업기반연구소: 연구소 설립을 전제로 국가(산업체)와 협약을 맺을 경우 설립하는 연구소 (개정: 2022.6.23)
2. 중점연구소: 대학 또는 학과의 발전계획 및 중점추진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소 (개정: 2020.10.15)
3. 병역특례연구소: 병역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선정으로 설립하는 연구소 (개정: 2020.10.15)
4. 독립채산연구소: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재원을 스스로 창출하여 부담하는 연구소 (개정: 2020.10.15)

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소는 부서승인연구소로서 설립할 수 있다. 단,

부서승인연구소에는 별도 조직코드를 부여하지 않으며 연구과제 및 간접비 권리 권한은 소속 단위조직에서 가진다. (개정: 2020.10.15)

④ 연구소 설립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는 '대학 부설연구소 운영지침'에 따르되, 부서승인연구소의 경우 단위조직 부서의 장이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. (개정: 2020.10.15)

제 3 장 조직 및 직제

제4조(조직) 법인승인연구소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팀, 부 또는 실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(개정: 2016.9.7)(개정: 2019.8.11)(개정: 2024.4.17)

제5조(주요직제)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할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연구소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법인승인연구소에는 부(실/팀)장 등을 둘 수 있으며, 부(실/팀)장 등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: 2019.8.11)(개정: 2024.4.17)

④ 대학 부설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 단, 행정지원인력의 경우 사고 또는 결원이 발생하면 연구소장은 원소속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0.10.15.)

⑤ 부소장과 하부조직의 부(실/팀)장 등은 교원, 5급 이상의 직원, 책임급 이상의 연구계약직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: 2024.4.17)

제 4 장 운 영

제6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1. 정부, 지자체,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
2.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(사업, 장비임대 등)
3. 기타수입

제7조(재정의 관리)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. (개정: 2020.10.15)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각 연구소의 연구사업계획 수립, 연구과제 선정, 연구사업 수행, 연구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, 협의하기 위해 연구소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

정한다.

제 5 장 평 가

제9조(평가) ① 연구소의 설립목적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평가 및 감사의 시기, 방법, 결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'대학 부설연구소 운영지침'을 따른다. (개정: 2020.10.15)

제10조(평가결과의 적용) ① 우수연구소의 경우 총장이 가용범위 내에서 정책연구비의 지원, 강의부담 경감, 행정인력지원, 연구공간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실적이 저조한 연구소의 경우 총장은 제반 대학 지원의 감축은 물론 유사성격의 연구소와 통합 또는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 6 장 기 타

제11조(독립채산연구소) 독립채산연구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채산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. (개정: 2020.10.15)

제12조(세칙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구소와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시행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산학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4월 17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